

#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침 개정 사항

※ 페이지는 19년도 지침 기준

페이지	2019년(기존)	2019년(개정)	비고
1	<p>4. 사업대상</p> <p>○ (대상시설)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*</p> <p>- 노인양로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, 노숙인 요양·재활시설, 한센·결핵시설, 아동 그룹홈, 지역아동센터, 지역자활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</p> <p>* 지자체는 지역특성 및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대상시설 조정 가능 * 지자체 자체 사업은 본사업과 별도 분리 또는 보충적 운영방식에 따른 통합운영 가능</p>	<p>4. 사업대상</p> <p>○ (대상시설)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(단,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우선)</p> <p>- 지자체는 지역특성 및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대상시설 조정 가능</p> <p>- 지자체 자체 사업은 본사업과 별도 분리 또는 보충적 운영방식에 따른 통합운영 가능</p>	대상시설 명확화
11	<p>3) 조리원</p> <p>○채용 우선순위</p> <p>- 1순위 :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</p> <p>- 2순위 :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 소지자</p> <p>- 3순위 :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</p>	<p>3) 조리원</p> <p>○채용 우선순위</p> <p>- 1순위 :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 소지자</p> <p>- 2순위 :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</p>	조리원 채용 기준 완화
24	<p>1. 지원대상 :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, 이용시설</p> <p>* 노인양로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정신요양시설, 노숙인 요양시설, 노숙인 재활시설, 한센·결핵시설, 아동그룹홈, 지역아동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</p>	<p>1. 지원대상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(단,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우선)</p>	